

#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28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15년 03월 12일
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## 1. 제안이유

-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본청 조직 개편에 따른 분장사무를 기능과 역할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기획조정실의 분장사무에 “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·조정”에 관한 사항”과 “학부모 지원 및 시민 협력”에 관한 사항을 추가 (안 제7조)
- 교육정책국 분장사무에 “학부모 교육 및 지원”에 관한 사항을 “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”으로 함(안 제8조)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규

- 1)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
- 2)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
- 3)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##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0호와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0.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·조정예 관한 사항
- 11. 학부모 지원 및 시민 협력에 관한 사항

제8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9.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및 제4항 중 “체육건강청소년과장”을 “체육건강과장”으로 한다.

②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1호 중 “예산정보담당관” 을 “예산담당관” 으로,  
“책임교육과장” 을 “학생생활교육과장” 으로, “교육시설과장”  
을 “교육시설안전과장” 으로 한다.

③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 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본문 중 “공보담당관” 을 “대변인” 으로 한다.

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기획조정실)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~9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7조(기획조정실)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~9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10.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·조정</u>에 관한 사항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11. 학부모 지원 및 시민 협력</u>에 관한 사항</p>
<p>제8조(교육정책국) 교육정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~8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9. 학부모 교육 및 지원</u>에 관한 사항</p>	<p>제8조(교육정책국) 교육정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~8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9. 민주시민교육</u>에 관한 사항</p>

##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사항 없음

#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

#### 3. 미첨부 사유

실·국간 분장사무의 조정에 관한 내용으로 비용발생 없음

#### 4. 작성자

교육위원장